

#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

(한국인터넷진흥원 재무감사)

## ① 감사실시 개요

- 감사기간 : 2010. 11. 15. ~ 11. 27. (10일간)
- 감사인원 : 감사담당 사무관 외 5명
- 주요 감사사항
  -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 여부, 출연금 등 수입금 관리실태
  - 물품구매·관리, 공사 및 용역 등 계약업무 수행실태
  - 기관 통합에 따른 근로조건 통합 적정성 등

## ② 기관 현황

- 조 직 : 2실 2본부 1센터 8단 40팀
- 정 원 : 251명
- 설립근거 :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
- 주요사업
  - 인터넷·정보보호에 대한 정책 및 기술 개발
  - 인터넷주소자원 관리, 인터넷의 효율적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
  -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 및 국외홍보, 국외진출 지원
  -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및 인터넷 주소분쟁 조정 등

### ③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

제목	지적내용	처분요구사항
<p>① 인터넷침해 대응센터 네트워크 구축사업 추진 부적정</p>	<p>◎ '인터넷침해대응센터 신규 네트워크 및 보안시스템 구축사업'과 관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2억 원 이상 계약업무의 경우 원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함에도 업무담당자 및 팀장 전결로 계약 추진</li> <li>• 조달청에 대한 공고취소 및 신규공고 의뢰, 납품규격 변경 등은 계약부서를 통해 처리해야 함에도 사업부서에서 직접 처리</li> <li>• 사전에 공고 및 계약 시 통지되지 않은 납품일정을 계약업체에 요구 등</li> </ul>	<p>징계1명 경고1명</p>
<p>② 자산취득비 등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</p>	<p>◎ 소모성 물품구입비로 구입하여야 할 세제 등을 시설비로 구입하는 등 134,127 천 원의 세출예산을 정당한 예산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</p>	<p>기관경고</p>
<p>③ 공사·용역 계약사무 처리 부적정</p>	<p>◎ 계약 관련 서류 미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공사·용역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낙찰자로부터 산출내역서, 착공신고서(공사 계약에 한함) 등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함에도 낙찰자로부터 공사의 착공 또는 용역의 착수 전에 당해 관련 서류의 수령 및 확인 소홀</li> </ul> <p>◎ 선금 지급업무 부적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선금지급조건을 명시하고, 잔금 지급전에 사용내역서를 제출</li> </ul>	<p>주의 2명</p>

	<p>받아 지급된 선금이 계약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에도 사용 내역서를 확인하지 않고 잔금을 지급하는 등 부적정하게 선금 지급업무 처리</p> <p>◎ 협상에 의한 계약 기준 변경 미승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 없이 제안서 평가점수 1위 업체에 추가 투찰기회 제공 등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손상시킬 여지가 있는 내용을 협상에 의한 계약기준에 포함</li> </ul> <p>◎ 재공고입찰의 유찰에 따른 계약사무 처리 부적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재공고입찰이 유찰된 경우에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시 입찰을 추진하지 않고 유찰 선언 후 입찰에 참가했던 1개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평가를 실시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</li> </ul>	
<p>④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및 적립포인트 집행 소홀</p>	<p>◎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법인카드는 심야시간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도 일부 직원이 심야시간대에 법인카드 사용</li> </ul> <p>◎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현금화가 가능한 법인카드 포인트 7,059,722원에 대한 세입 조치 미이행</li> </ul>	<p>주의 4명</p>
<p>⑤ 인사관리 부적정</p>	<p>◎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직원을 대상으로 근무성적 평정결과, 근속기간 및 경력기간을 합산하여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 기준으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</p>	<p>주의 4명</p>

	<p>◎ 09. 7. 23. 기관 통합이후 통합된 직원들의 직급전환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'09. 12. 31.과 '10. 06. 30. 기준 승진후보자명부 미작성</p>	
<p>⑥ 계약자 선정 평가지침 취약</p>	<p>◎ 계약자 선정 평가를 위한 외부 전문가 pool을 등록·관리하지 않고 있어 외부 평가위원의 경우 동일인이 반복되어 추천·선정</p> <p>◎ 또한, 사업계획을 기획하고 사업 관리·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계약의뢰부서 업무담당자가 내외부 평가위원에 대한 섭외 및 선정까지 담당하고 있어 계약자 선정을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위원회 운영이 어려운 실정</p>	<p>통보</p>
<p>⑦ 자문비 지급 시 수수료 산정 미흡</p>	<p>◎ 담당자마다 자문 수수료 산정방식을 서로 상이하게 적용하여 일반적인 법률 자문임에도 자문료가 서로 다르게 지출되는 등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절감 노력 미흡</p>	<p>통보</p>
<p>⑧ 우수부서 및 직원 포상 절차 부적정</p>	<p>◎ 포상대상자 추천 및 인사위원회 심의 등 정당한 포상절차 없이 직원 포상 추진</p>	<p>통보</p>